

## 서울대학교 학생설계전공 시행세칙

제정 2022.01.04.

개정 2023.02.09.

개정 2025.03.0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6장 제24조~28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때 또는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이하 ‘자유전공학부’라 한다.)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①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로 한다.
2.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이어야 한다.
3. ‘전공설계2’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자유전공학부 전공필수 과목 중에서 ‘주제탐구세미나1’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설계2’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승인 요건)** 학생설계전공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기존 전공과의 차별성
2. 이수 목적과 전공 영역 교과목의 타당성
3. 이수 계획의 타당성

**제4조(교과과정 편성)** ① 전공과목 교과과정은 전공교과목 51학점 이상 78학점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공필수 교과목은 자유전공학부에서 개설하는 ‘전공설계2’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3학점, 5과목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기 이수 교과목은 최초 교과과정 편성 시에 한해 최대 10학점까지 포함 가능하다. 교과과정 변경 시에 기 이수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④ 타 대학 교과목은 교과과정 편성이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대학 수학이 필요할 경우, 아래 제6조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교과과정 편성 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및 전공설계지원센터 객원교원과 반드시 상의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교과과정 변경 신청 시 반드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시 자유전공학부 전공교과목 중 편성 가능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1. 종합설계

2. 자율연구1, 자율연구2 중 1과목

3. 창의융합세미나, 인문예술융합세미나, 자연과학융합세미나, 사회과학융합세미나

자유전공학부 교과목은 제1호를 제외하고 6학점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며, 제1호 및 제2호는 자유전공학부 전공교과목 졸업이수학점과 중복 인정 가능하다.

⑦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시에는 전공교과목을 81학점 이상 120학점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교과과정 변경)** ① 매년 신규 신청과 같은 기간에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여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 한다.

②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 변경은 총 1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과목 개설 학과의 과목 폐지, 통합, 신설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과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그 외 필요한 사항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타 대학 수학 교과목 학점 인정)** ① 타 대학 수학 2개월 전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에게 “타 대학 수학 전공 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기 이수 교과목은 타 대학 수학 전공 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타 대학 수학 교과목 전공 인정 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학생설계전공 타 대학 수학 전공학점 인정 신청은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 중 유사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유사 교과목명을 표시해서 신청하거나, 서울대학교 전체 교과과정에 유사한 교과목이 없어서 교과과정에 포함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이유를 학생설계전공 취지에 부합되도록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학사지도 등)**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학사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에게는 학사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청 및 취소)** 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설계전공 신청 기간에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의 별지 제5호 학생설계전공 신청서와 학생설계전공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고, 이를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설계전공 복수전공의 취소는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이수 규정」 별지 제2호 학생설계전공 취소원과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고, 이를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설계전공 주전공의 취소는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고, 이를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생설계전공을 선택했다가 취소한 후 기존 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여부는 해당 대학의 결정에 따른다.

⑤ 학생설계전공 선택 후 다른 학생설계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 여부는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이수학점)**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자유전공학부 주전공으로 이수하려 할 경우에는 39학점, 학생설계전공을 자유전공학부 심화전공으로 이수하려 할 경우에는 6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10조(학생설계전공위원회)** 학생설계전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설계전공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2. 01. 0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2. 0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02. 28.>**

이 시행세칙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